

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 추가경정 예산안

심 사 보 고

1. 심사경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1. 4. 화순군수
- 나. 회 부 일 자 : 2001. 4. 21.
- 다. 심 사 기 간 : 2001. 4. 16 ~ 21 (6일간)
- 라. 심사대상 실과소 : 기획예산실 외 11개 실과소

2. 제안 설명요지

- 가. 제안설명 : 기획예산실장 배 병 선 (2001. 4. 16 제1차 본회의)
- 나. 제안사유
 - o 당초예산 편성이후 국·도비의 보조금 및 양여금사업 재원의 확정으로 인하여 당초예산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발생되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
 - o 지방재정법 제136조 (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등)
 - o 지방자치법 제121조 (추가경정 예산)
 - o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(예산안 심사)

3. 예산 규모

가. 회계별 규모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추경예산	기정예산	증 감	비 고
계	141,338	114,762	26,576	23.2%
일반회계	125,330	102,496	22,834	22.3%
특별회계	16,008	12,266	3,742	30.5%

나. 세입지원내역

(단위 : 백만원)

계	임시적세외수입	지방교부세	지방양여금	국고보조금	도비보조금
26,576	9,483	11,709	1,841	2,399	1,144
23.2%	109.8%	26.6%	12.5%	12.6%	12.2%

다. 일반회계 세출내역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추경예산	기정예산	증 감	%
계	125,330	102,496	22,834	22.3%
일반행정	29,820	27,576	2,244	8.1%
사회개발비	43,830	31,009	12,821	41.3%
경제개발비	47,207	35,736	11,471	32.1%
민방위비	207	227	43	18.9%
지원및기타경비	4,203	7,948	△ 3,745	

라. 특별회계 세출내역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추경예산	기정예산	증 감	%
계	16,008	12,266	3,742	30.5%
주택사업	88	88	0	
의료보호금기금	2,931	2,914	17	0.06%
상수도사업	6,886	3,861	3,025	78.3%
농림수산업진흥기금	1,510	917	593	64.7%
영세민생활안정자금	514	431	83	19.3%
농공단지조성	2,292	2,467	△175	△7.1%
주차장사업	1,135	936	199	21.3%
내고장상품관리	648	648	0	

4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양정열)

○ 본 제1회 추경예산은

- 당초예산편성이후 국.도비의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, 임시적 세외수입등을 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,
-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1,413억 3,800만원 (23.2%증가)으로 편성되었으며, 그중 일반회계는 1,251억 3천만원 (22.3증가)으로 그 주요 재원은 지방교부세 117억 (26.6%증), 임시적 세외수입 95억(109.8%증), 지방양여금 18억(12.5%증), 국.도비 보조금 35억(12.4%증)등으로 편성되었으며,

- 특별회계는 총 160억원 (30.5%)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의 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임.
- 주요세출 내역을 살펴보면
 - 일반회계는 사회개발비가 128억(41.3%증)으로 가장 많이 투자 되었으며 내용별로 보면 지역사회개발비 54억원, 문화및체육진흥비 37억원, 환경관리비 30억원등로 증액 투자 되었으며,
 -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비가 30억원 (78.3%증)으로 가장 많이 투자되었 으며 다음은 농수산진흥기금이 약 6억원 증액 투자 되었음을 알수 있음.
- 금번 추경예산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해 보면
 - 우선 열악한 재정여건속에서도 다행이 지방교부세와 양여금 국·도비등의 재원으로 추경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집행부의 많은 노력이 있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 할 수 있겠으나,
 - 추경예산이란 원칙적으로 당초예산 성립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본 예산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되는 예산이란 점을 감안해 본다면 당초 예산에서 예산절감 자원의 삭감된 예산이 재편성 된다는가 당연히 당초예산에 편성될 예산이 누락되어 추경에 편성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며,
 - 특히, 사업의 효과성이나 필요성의 논란 끝에 삭감된 사업예산의 재편성은 그동안의 여건 변화등 사업목적에 따른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검토 되었으며,
 - 한편, 당연히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이 누락되어 또 다른 추경요인이 되고 있는 사항은 없는지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.
 - 결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편성은 지역의 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하나의 「사업계획서」라 할 수 있으므로, 특정지역이나 연고주의등에 의한 배려가 된다면 곧 전체 군민과 국가발전에 지해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명분과 실리가 존중되는 예산 편성이 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,
 - 현행 지방재정관련 제도상, 추경예산 편성은 구조적 필연성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보다 알뜰한 군정의 살림 살이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심사가 되어져야 할 것으로 검토 되었음.

5. 결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6. 위원회 활동

가.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(2001. 4. 16)

- 위원장 간사 선출
 - 위원장 : 문정조 의원
 - 간 사 : 정중구 의원

나.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(2001. 4. 19)

-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
- 각 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
- 전문위원 검토 보고
-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세부설명 청취 및 질의
 - 기획예산실, 총무과, 재무과, 문화관광과, 사회복지과, 환경과, 농산과, 건설과, 보건소

다.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(2001. 4. 20)

-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
- 축조심사
- 항목별 계수조정

라.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(2001. 4. 21)

-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
- 추경 예산안 심의 의결

7. 심사요지 (주요 착안사항)

- 기타. 선심성이나 불요급한 예산은 가급적 지양

8. 심사결과

『수정가결』

-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의결하고, 세출예산 125,330,353천원중 군정홍보 수수료등을 포함한 19건, 814,665천원을 삭감하고, 특별회계 세입·세출 예산은 원안의결

9. 첨 부 :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 추가경정
예산안 삭감액 조서 1부. 끝.

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 추가경정
예산안 삭감액 조서
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일 반 회 계

o 삭감조서

삭감액 총액	814,665천원
기획예산실	69,845천원
총 무 과	23,020천원
재 무 과	114,000천원
환 경 과	540,000천원
농 산 과	12,500천원
건 설 과	40,000천원
보 건 소	15,000천원
읍면 소관	300천원

일반회계세출예산삭감액조서

〈기획예산실〉

(단위 : 천원)

과 목				사 업 명	요구액	사정액	삭감액	페이지
항	세항	세세항	목					
기획예산관리	홍보관리	경상적경비	일반운영비	군정홍보 수수료	55,000	0	55,000	59
“	“	“	“	기자실운영 소모품구입	900	0	900	59
“	“	“	“	월간지 및 주간지 구독	13,253	0	13,253	59
“	“	“	“	기자실난방 유류대	692	0	692	60

일반회계세출예산삭감액조서

〈 총 무 과 〉

(단 위 : 천 원)

과 목				사 업 명	요구액	사정액	삭감액	페이지
항	세항	세세항	목					
총무행정	일선행정관리	경상적경비	일반운영비	자랑스런 화순인 상패 제작	1,200	0	1,200	66
"	"	"	업무추진비	군정수행 시책추진비	54,720	45,600	9,120	66
"	"	"	포상금	칭찬대회 우수공무원 시상	2,700	0	2,700	67
"	"	"	포상금	새마을 단체인마음대회 보상	10,000	0	10,000	67

일반회계세출예산삭감액조서

〈 재 무 과 〉

(단 위 : 천 원)

과 목				사 업 명	요구액	사정액	삭감액	페이지
항	세항	세세항	목					
재부 행정	재산 관리	자체 사업	시설비 및 부대비	동북면 복지회관 목욕 탕 보수	64,000	0	64,000	77
“	“	“	자산 취득비	군민회관 귀빈실 집기 구입등	10,000	0	10,000	78
“	“	“	“	고속 복사기 구입(1대)	60,000	20,000	40,000	79

일반회계세출예산삭감액조서

〈환경과〉

(단위 : 천원)

과 목				사 업 명	요구액	사정액	삭감액	페이지
항	세항	세세항	목					
환경관리	환경정화	보조사업	시설비 및 부대비	화순읍 비위생 매립장 정비	522,406	0	522,406	105
“	“	“	“	화순읍 비위생 매립장 정비 (실시 설계비)	14,678	0	14,678	105
“	“	“	“	화순읍 비위생 매립장 정비 (부대비)	2,916	0	2,916	105

일반회계세출예산삭감액조서

<농 산 과 >

(단위 : 천원)

과 목				사 업 명	요구액	사정액	삭감액	페이지
항	세항	세세항	목					
농정 관리	축산 관리	보조 사업	민간 자본 이전	내수면 토산어종 개발	25,000	12,500	12,500	135

일반회계세출예산삭감액조서

<건설과>

(단위 : 천원)

과 목				사 업 명	요구액	사정액	삭감액	페이지
항	세항	세세항	목					
농정 관리	농업 기반 조성	자체 사업	시설비 및 부대비	동북 유천리 경지정리 개거	90,000	60,000	30,000	142
경상 예산	사업 예산	“	“	지하수 폐공 원상복구	10,000	0	10,000	177

일반회계세출예산삭감액조서

<보 건 소 >

(단 위 : 천 원)

과 목				사 업 명	요구액	사정액	삭감액	페이지
항	세항	세세항	목					
보건	보건행정	자체사업	시설비 및 부대비	정문이설 담장설치 등 기반조성비	50,000	35,000	15,000	92

일반회계세출예산삭감액조서

< 읍면소관 >

(단위 : 천원)

과 목				사 업 명	요구액	사정액	삭감액	페이지
항	세항	세세항	목					
총무행정	일선행정관리	경상적경비	일반보상금	읍면이장.부녀회장 소양교육 참석자 보상	7,200	6,900	300	214